

발명장려사업 추진요령 일부 개정

특허청은 16일 발명장려사업 추진요령을 일부 신설·삭제·개선·조정한 개정 내용을 고시했다.

고시일인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된 발명장려사업 추진요령의 전문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I. 개정이유

발명장려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고시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새로이 규정하고, 기존 사업중 그 운영상 문제점이 있거나 관련 단체에서 개정 의견이 있는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함.

II. 주요개정 골자

가. 새로운 사업의 신설, 삭제

- 신설
 - 특허기술 기업화 상담센터 설치·운영 (제3장)
 - 중소기업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제4장)
- 삭제
 - 발명장려사업의 민간위탁(제1장 제5조)
- 특허법 제27조 및 발명장려보조금 교부 규정 제2조에서 기규정

나. 기존사업의 합리적 개선·조정

- 발명장려사업의 종류 추가(제1장)

- 특허기술 기업화 상담센터 설치 운영
- 중소기업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
 - 우수발명시작품 제작지원 사업의 합리화(제5장)
 - 우수발명시작품 지원 대상자 선정절차의 명확화(제21조 2항)
 - 심사결과 고득점 순위에 의거 예비 대상자를 선정 후 원가조사 결과 예산을 고려하여 지원비율을 결정한 후 지원 대상자를 확정
 -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우수특허기술에 대하여 선정심사시 만점의 5% 이내에서 가점 부여
 - 전국우수발명품 전시회 개최 사업의 합리화(제6장)
 - 지방의 발명특허기술의 정보교류를 위한 지방전시회 개최 및 매년 개최 횟수 제한 삭제(제28조)
 - 출품자격(제30조)
 - 승계인 및 출원중인 자에게도 출품자격 부여
 - 시상(제35조)
 - 수상자를 발명자 또는 고안자에서 출품자로 변경
 - 출원중인 출품에 대한 시상을 장려상 이하로 제한
 - 학생발명활동 촉진 사업의 합리화(제7장)
 - 효율적인 해외견학을 위한 지도교사의 해외견학 제한(제55조)
 - 동일국가, 동일지역으로 재견학 제한(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금상 이상은 수상횟수

및 지역에 무관하게 견학 기회 부여)

○ 무료 변리지원사업, 지원대상 조정(제10장)

- 의장출원에 대한 무료변리 제외(제66조, 제67조)

○ 용어의 명확화

- 회장→협회장

Ⅲ. 개정된(특허청 고시 제92-2호) 발명장려사업 추진 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발명장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세발명자”라 함은 생활보호법 제3조에서 정한 보호대상자로서 발명·고안을 한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학생 발명반”이라 함은 각급학교에 설치된 학생발명반으로서 교육(구)청 및 시·도 교육청을 경유하여 특허청에 신고된 발명반을 말한다.

4. “외국출원비용”이라 함은 내국인이 외국에 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소요되는 비용중 외국관계 기관 등에 출원료 등으로 송금한 비용을 말하며 국내 변리사에 대한 사건 수입료 등은 제외한다.

5. “국제전시회”라 함은 외국에서 국제적 규모로 개최되는 발명품 및 신기술 전시회로서 한국발명특허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특허청의 승인을 받아 출품업무를 주관한 전시회를 말한다.

6. “내국인”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을 위한다.

제3조(발명장려사업의 종류)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발명장려사업의 종류는 아래 각호와 같다.

1. 발명장려관의 설치·운영
2. 특허기술기업화 상담센터 설치운영
3. 중소기업특허기술 사업화 지원
4. 우수발명시작품 제작비 지원
5. 전국우수발명 전시회 개최
6. 학생발명활동 촉진
7. 외국출원비용 지원
8. 국제전시회 출품 등 지원
9. 무료변리지원 사업
10. 발명진흥 유공자에 대한 포상

제4조(보조금 교부)

① 특허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발명장려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교부규정에 의거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단체포함 이하 같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규정 제5조 제1항에 정한 신청서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발명장려관의 설치·운영

제5조(발명장려관의 설치·운영) 발명을 장려하고 우수발명품의 상설전시회를 통한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협회 산하에 발명장려관을 설치·운영한다.

제6조(발명장려관의 사업)

① 발명장려관은 아래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우수발명품의 상설전시 사업
2. 학생발명품 전시사업
3. 기타 발명의 연구 및 장려에 관한 사업

② 한국발명특허협회 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은 발명장려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운영실적을 반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청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제3장 특허기술기업화 상담센터 설치·운영

제7조(특허기술 사업화 상담센터의 설치 운영) 특허기술 정보자료 제공, 기업화 상담(매매, 실시권 허여알선 등)을 통하여 우수특허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협회 산하에 특허기술기업화 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상담센터의 사업)

① 상담센터는 아래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업종별 출원·등록동향 파악
2. 각종 특허정보자료 수집·가공 및 제공
3. 산업재산권 매매·실시권 허여알선
4. 관련 단체 등에 특허기술의 이용 안내 등 홍보업무

② 협회장은 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매반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운영실적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중소기업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

제9조(사업화 지원) 우수특허기술의 사업화를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협회장은 아래 각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1. 기술성 평가
2. 정책자금과의 연계지원 추천
3. 무담보 사업자에 대한 보증 추천의뢰

제10조(신청) 사업화 지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매년 12월 말일까지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회장은 필요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지원대상) 중소기업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대상은 내국인으로 지원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자로서 특허법,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된 권리의 등록권리자와 그 승계인 및 전용실시권을 허여 받은 자로 한다.

제12조(우선지원대상) 협회장은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 특허기술 사업화(이하 “사업화”라 한다) 지원을 신청할 경우 기술성 평가의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우수발명시작품 제작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그 지원을 받은 자
2. 신청일 현재 등록된 권리로서 특허청이 주관하는 전국우수발명품 전시회에서 금상 이상 수상한 자
3. 기타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우수 특허기술의 등록권리자

제13조(사업화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① 협회장은 기술성 평가 및 자금·보증 추천대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협회내에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협회 상근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학계, 업계, 연구소, 전문 경영인 등 관련기관의 전문가로 분야별 4인 이내 총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협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협회장은 신청인의 수를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치 아니할 수 있다.

③ 협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화 선정심의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선정기준)

① 협회장은 사업화 지원대상자 선정시 아래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1. 기술적 우수성
2. 기업화 가능성
3. 국민경제 기여도

② 지원대상자 선정기준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신청절차 등)

① 사업화 지원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정한 신청서에 아래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등록원부 사본 1부.
4. 공보명세서 사본 1부.
5. 수상실적 증빙사본 1부.
6. (시)제품 (시험분석기관에 기술성 평가 의뢰시 제출)

② 협회장은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이의 보완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화 지원신청은 동일 특허기술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보고 및 추천의뢰)

① 협회장은 사업화 신청접수 및 선정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고 자금 및 보증지원을 위한 관계기관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협회장은 분야별 기술성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기술성 평가를 의뢰하고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우수발명시작품 제작비 지원

제17조(시작품제작비 지원) 청장은 발명인의 사기진작과 발명의욕을 고취하여 우수발명을 적극 유도하고 발명의 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발명의 시작품 제작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원대상) 내국인으로서 개인 또는 중소기업자가 특허법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한 발명·고안으로서 시작품 제작비 지원 신청일 현재 그 권리가 존속하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신청일 이전에 이미 등록권리를 양도하였거나 권리설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발명·고안은 제외한다.

제19조(신청기간) 시작품 제작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매년 1월말까지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회장은 필요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시작품 선정심의위원회 설치)

① 협회장은 시작품제작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협회내에 시작품 선정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협회 상근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학계, 업계, 수출유관단체, 연구소, 전문 경영인, 발명인 및 관련기관의 전문가로서 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협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선정기준 등)

① 시작품 제작 대상의 발명·고안은 아래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1. 기업화 가능성
2. 수출 유망성
3. 기술적 우수성
4. 국가산업발전 기여도
5. 총 제작비 등 자기부담 능력 등

② 시작품 제작비 지원대상은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심사결과 고득점 순위에 의거 예비대상자를 선정한 후 원가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 및 예산을 고려하여 지원비율을 결정 한 후 지원대상자를 확정한다.

③ 심사결과 동일점수 또는 동일순위로 결합이 될 경우에는 영세발명자, 학생발명자, 개인발명자, 중소기업자의 발명·고안 순으로 한다.

④ 기타 청장이 인정하는 우수 특허기술에 대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심사시 만점의 5% 이내의 가점을 줄 수 있다.

제22조(보조금 교부기준)

① 시작품 제작비 보조금은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상인원과 예산을 고려하여 아래 교부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1. 영세발명자 및 학생발명자는 제작비용의

전액범위내

2. 개인발명자는 제작비용의 90% 범위내
3. 중소기업자는 제작비용의 80% 범위내

② 제1항의 제작비용 산출기준은 재무부 재정회계예규에 의해 지정된 원가조사 기관의 원가계산의 금액으로 한다.

제23조(시작품 제작 의뢰)

① 협회장은 시작품 제작 업체(기관)를 선정하고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청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2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시작품 제작 계약체결전에 시작품 제작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협회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시작품 제작비 지급 및 시작품 인도)

① 협회장은 시작품 제작이 완료되면 이를 검수하고 제작비용을 정산하여 당해 시작품 제작업체(기관)에 지급한다.

② 협회장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와 시작품 제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작비용의 일부를 제작공정에 따라 시작품 제작 완료전에 지급할 수 있다.

③ 협회장은 시작품 제작 업체(기관)로부터 검수한 시작품(금형포함)을 즉시 신청인에게 인도한다.

④ 협회장은 시작품 제작비 지급 완료후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시작품 제작지원 발명의 사후관리)

① 협회장은 시작품 제작지원 발명의 기업화를 위하여 시작품의 전시, 특허권의 양도 또는 실시허여, 합작투자 및 금융지원 등의 알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회장은 매년 시작품의 기업화 추진 실적 등을 조사·관리하여야 하며, 그 현황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시작품 제작 협조 및 보고) 협회

장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당해 시작품 제작에 관한 협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시작품 제작의 정지 및 취소) 협회장은 시작품 제작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작품의 제작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기집행된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작품제작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음이 판명되었을 때

2. 시작품 제작비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

3. 시작품 제작비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발명고안을 협회장과의 사전 협의없이 당해 특허권을 양도한 때

4. 기타 이 요령의 규정에 위반한 사항이 발생한 때

제35조(시상)

① 협회장은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우수발명품에 대한 시상을 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우수발명품에 대하여는 상장과 상금, 트로피 또는 메달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우수발명품에 대한 수상대상자는 등록권자 또는 출원자(출품자)로 한다.

④ 출원중인 출품물에 대한 시상은 장려상이하로 한다.

제36조(전시장 배정)

① 협회장은 출품물의 전시위치 면적 등 전시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부스를 배정하며, 출품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출품자는 배정된 부스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으며 타 목적으로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없다.

제37조(부수장치물 공사등)

① 전시장의 기본시설 이외의 부수장치물은 출품자의 부담으로 시공한다.

② 전시장 내의 전화설치료, 전화사용료, 전기사용료, 급배수설치비 등의 경비는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품자가 부담한다.

제38조(전시품 반·출입) 출품자의 전시품 반입과 반출은 협회장이 정하는 기일내에 행하여야 한다.

제7장 학생발명활동 촉진

제39조(학생발명활동 촉진) 청장은 학생발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대한민국 학생발명품 전시회 개최
2. 세계학생발명품 전시회 개최 및 참가
3. 학생발명활동 촉진을 위한 전국순회 강연회 개최
4. 학생발명반 활성화 지원
5. 기타 학생발명활동 촉진 사업

제40조(전시회 개최) 청장은 학생시절부터 발명에 관심을 가지고 발명을 일상생활화하게 함으로써 미래의 고도 산업사회에 주역이 될 발명의 꿈나무들을 많이 발굴, 양성하기 위하여 매년 대한민국 학생발명품전시회(이하 “학생발명품 전시회”라 한다)를 개최한다.

제41조(출품대상) 출품대상은 초, 중, 고, 대학생(전문대 포함 이하 같음)의 발명이나 고안품을 대상으로 한다.

제42조(출품규격) 출품물의 규격은 가로 100cm, 세로 100cm, 무게 30Kg 이내의 것으로 한다. 다만, 동 규격을 초과하거나 특수시설을 요하는 경우에는 미리 협회장과 협회하여야 한다.

제43조(출품절차)

① 학생발명품 전시회에 출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소정의 기간 내에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장은 매년 전시회 개최일 6개월 전에 신청요령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출품심사) 출품물을 심사할 경우

에는 초, 중, 고, 대학생별 수준을 고려 심사하되 출품발명의 창작성, 실용성, 경제성, 출품 학생의 수준에 맞는 발명·고안인지 여부, 기타 다른 전시회에의 출품 여부 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한다.

제45조(준용규정) 제29조, 제31조,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제35조, 제36조, 제38조의 규정은 학생발명품 전시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6조(전시회 개최 및 참가) 청장은 필요할 경우 세계학생발명품 전시회를 개최하거나, 참가할 수 있다.

제47조(준용규정) 제4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은 세계학생 발명품 전시회 개최 및 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8조(순회강연회 개최) 청장은 각급학교 학생 및 교사에게 특허제도 소개, 발명기법 및 발명지도사예, 발명성공사예 발표 등 학생발명활동 촉진을 위한 전국순회강연회(이하 “강연회”라 한다)를 개최함으로써 발명인구의 저변확대와 특허제도 보급을 위한 순회강연회를 개최한다.

제49조(참가대상) 강연회의 참가대상은 초, 중, 고, 대학생 및 발명 지도교사와 발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로 한다.

제50조(학생발명반 활성화 지원) 청장은 학생발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도연구비, 해외견학비 및 학생발명반 활성화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제51조(지급대상자 선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아래 각호에 규정된 자 중에서 선정한다.

1.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협회에서 주관하는 학생발명품 전시회에서 동상 이상을 수상한 자 및 교육부 또는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발명활동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

2. 지도연구비 및 해외견학비 지급대상자는

협회에서 주관하는 학생발명품 전시회의 수상 학생 지도교사(대학교수는 제외) 및 우수발명반 운영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지도교사, 학생발명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각 시·도(교육청) 과학담당 장학(관)사

3. 지원금 지급대상 학교는 제1호 및 제2호의 학생 및 지도교사의 소속학교와 학생발명반을 설치 운영하는 학교중 교육부 또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 발명활동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추천한 학교

4. 청장은 학생발명반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이외의 학생, 지도교사, 장학관(사) 및 학교를 선정 지급할 수 있다.

5. 학생발명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제52조(지급기준)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구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3조(지급시기) 지원금은 반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그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4조(지원금의 사용 및 지급제한)

① 지원금은 학생발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및 활동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을 동일학교에 계속하여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그 횟수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55조(지도교사의 해외견학 제한) 지도교사의 해외연수는 수혜대상자를 확대하고 중복 견학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국가 또는 동일 지역으로 재 견학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금상(이하 “금상 이상”이라 한다)의 경우는 계속 견학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8장 외국출원비용 지원

제56조(외국출원비용 지원) 청장은 내국인의 외국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출원

을 장려하기 위하여 외국출원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7조(신청인의 자격) 외국출원비용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내국인으로서 외국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한 개인 또는 중소기업자이어야 한다.

제58조(신청절차)

① 외국출원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규정 제5조 제2항에 정한 신청서에 아래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출원 증명서류 사본 1통. (출원번호 통지서 또는 출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2. 외국출원비용 증빙서류 사본 각 1통. (외국환은행 발행 수납증 사본 또는 송금 증빙서류와 외국변리사의 청구비용 명세서 사본 등 해외비용 증빙서류를 말함)

3.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 각 1통.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 한함)

4.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중소기업 신청인에 한함)

5. 거래은행 계좌번호

① 협회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 마감일로부터 1개월내에 제반 서류를 검토,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외국출원비용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신청기간 및 대상) 외국출원비용 지원 신청기간 및 신청대상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신청기간은 매년 9. 1부터 9. 30일까지로 한다.

2. 신청대상은 전년도 9. 1부터 당해년도 8. 31 사이에 외국출원비용 송금사실이 있는 출원으로 한다.

제60조(교부기준)

① 외국출원비용 지원은 출원건 별로 40만원을 교부하되, 외국출원 비용이 80만원 미만일 경우는 그 비용의 50%를 교부한다.

② 신청인 1인에 대한 연간 지원건수는 5건 이내로 한다. 다만, 1개의 발명을 다수국에 출원하는 경우 각 지정나라수를 1건으로 한다.

③ 제58조에 의한 신청서의 접수결과 신청총액이 예산액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교부한다.

1. 개인발명자의 신청총액이 예산액을 초과할 때에는 개인발명자에게만 안분조정한다.
2. 개인발명자 및 중소기업자의 신청총액이 예산액을 초과할 때에는 개인발명자에게 우선 교부하고 잔액을 중소기업자에게 안분조정한다.

제61조(보고) 외국출원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사항이 있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내용을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협회장은 이를 종합하여 청장에게 익년 1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 당해 출원의 명의 변경
2. 당해 출원에 관한 거절사정, 등록사정
3. 기타 청장이 요청한 사항

제9장 국제전시회 출품 등 지원

제62조(국제전시회 출품 등 지원) 청장은 우수발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전시회 출품자에 대한 출품보조금 및 수상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3조(출품보조금 및 보상금 지급대상)

① 출품보조금은 내국인으로서 개인 또는 중소기업자가 국제전시회에 출품하였을 때 1인당 연간 3회 출품한도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진열대(부스) 사용료 지원은 1회 1진열대(부스)이상 사용시에는 1진열대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② 보상금은 제1항의 출품 중 입상한 발명·고안에 대하여 지급한다. 다만, 당해년도 국제전시회에서 동일인이 2개 이상을 출품하여 수상한 경우에는 그중 격이 높은 1개에 한

하여 지급하며, 보상금을 기지급 받은 발명과 동일 또는 유사한 발명·고안품으로 다시 입상할 경우에는 상종 및 훈격 불구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4조(출품심사위원회 설치)

① 우수한 발명·고안을 선별출품하기 위하여 협회에 출품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출품심사위원회는 협회장이 정하는 출품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발명품의 기술적 우수성, 다른 국제전시회에의 출품여부,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여부 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한다.

제65조(지급기준)

①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품보조금은 건당 출품비(부스 사용료, 카다록 게재료, 번역료)에 대하여 지원하며 그 지급기준은 아래 각호와 같다. 다만 개인발명자의 출품비용이 예산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개인발명자에게만 안분지급하고 개인발명자 및 중소기업자의 출품비용이 예산액을 초과할 때에는 개인발명자에게 우선 교부하고 잔액을 중소기업자에게 안분지급한다.

1. 개인발명자(학생 및 영세발명자 포함)는 출품비용 전액 범위내

2. 중소기업자는 출품비용의 80% 범위내

②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대상은 300만원 이내

2. 금상(특별상, 준대상 포함)은 200만원 이내

제10장 무료번리지원 사업

제66조(무료번리지원 사업) 대한번리사회 회장은 우수발명의 사장화를 방지하고 발명인구의 저변확대를 기하기 위하여 무료번리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제67조(지원대상자) 발명·고안을 하여 특허법·실용신안법에 의한 국내출원을 하고자 하는 영세발명자 및 학생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68조(지원범위) 무료변리지원 사업의 범위는 아래 각호와 같다.

1. 특허, 실용신안 출원에 대한 변리사의 출원대리

2. 산업재산권에 대한 상담

제69조(신청 및 지원방법)

① 무료변리지원을 받고자 하는 영세발명자 및 학생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대한변리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 경기지역을 제외한 지방거주자는 가까운 변리사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변리사를 선임하여 출원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성격상 명백히 발명·고안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와 예산 사정상 더 이상 수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하여 불수리 또는 반려할 수 있다.

제70조(보조금 교부 등)

① 청장은 대한변리사회 회장의 변리비용 지원 신청에 의하여 제66조의 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출원대리를 한 변리사에게는 국고보조금과 대한변리사회 자체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정의 변리비용중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변리지원 사업에 따른 출원보조금 지급 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리사회 회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1장 발명진흥 유공자에 대한 포상

제71조(발명진흥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발명사상 양양 및 발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발명진흥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72조(행사개최) 발명진흥 유공자 등에 대한 포상은 협회 주관으로 개최하는 발명의 날 행사시 실시한다.

제73조(포상대상)

① 발명진흥 유공자는 아래 각호에 해당하

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

1. 발명특허 유공자 : 산업재산권제도 발전 및 발명진흥에 크게 기여한 자

2. 우수개인·직무·여성 발명자

○ 우수한 발명 또는 고안으로 국가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발명(고안)의 출원·등록 실적이 많은 자

○ 국내의 발명품전시회에 입상된 우수발명자

○ 발명품으로 수출산업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3. 우수발명 지도교사 : 우수발명반 운영학교로 선정된 학교의 담당지도교사 및 특허청 주최 학생발명전시회 등에서 수상한 학생의 지도교사

② 발명진흥 유공단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단체 중에서 선정한다.

1. 우수특허관리업체 : 특허청 또는 협회에 특허관리 전담부서설치 신고를 필한 기업체 중 사내 특허관리제도를 우수하게 운영실시하고 있는 기업체

2. 우수발명반 운영학교 : 특허청에 신고된 학생발명반 설치 학교중 발명반 활동 실적이 우수한 학교

3. 기타 : 발명진흥 사업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단체

③ 청장은 제1항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자에 대하여 상장과 상금, 트로피 또는 메달을 수여할 수 있다.

제74조(추천절차)

①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신청 또는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협회장에게 신청서 또는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장은 자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 대상자를 시상일 2개월 전까지 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포상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청장이 별

이달의 焦點

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1983. 2. 9 특허청고시 제83-12호>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시행과 동시에 특허청 고시 제 82-9호, 제82-10호, 제82-11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1983. 6. 10 특허청고시 제83-13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5. 4. 23 특허청 고시 제85-2호>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시행과 동시에 특허청고시 제 82-9호, 제82-10호, 제82-11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1988. 8. 26 특허청고시 제88-4호>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폐지고시) 이 고시 시행과 동시 특허청 고시 제86-1호(86. 4. 1)는 폐지한다.
- ③ (경과조치) 이 고시중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전시회의 출품보조금은 89. 1. 1부터 적용한다.

부칙<1989. 9. 26 특허청고시 제89-1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 12. 18 특허청고시 제90-5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4. 특허청고시 제92- 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아이디어뱅크 안내

韓國發明特許協會에서는 産業 및 生活아이디어를 發掘하여 이를 實用化될 수 있도록 關聯企業등에 連繫시킴으로써 汎國民的인 發明風土를 造成하고자 다음과 같이 아이디어 뱅크를 開設하였으니 많이 利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對 象 : 産業 및 生活아이디어

◎申請方法 : 直接訪問, 書信 또는 電話

◎接 受 處 : 韓國發明特許協會

우편번호 135-090 서울 江南區 三成洞 143-19

◎接受된 아이디어의 處理

○分期別로 審査하여 實用化 可能性이 있다고 判斷되는 아이디어는 關聯企業에 實施斡旋

○特許·實用新案·意匠으로 設權可能하다고 判斷되는 아이디어는 出願誘導

○申請接受된 優秀한 아이디어는 綜合審査後 年末에 施賞

※ 기타 자세한 것은 本會 發明振興部(552-6845)로 문의바랍니다.

소련 총람

북방권연구회 편

규격:A5신·318면 가격:5,000원

新商標法解説

江口俊夫 著 규격:A5신·352면

鄭完燮 譯 가격:10,000원

판매: 한국발명특허협회 자료판매센터(전화 (02) 551-5571~2)